



# '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설명회 자료

2021. 2. 26.



## 목 차

I. 사업대상, 지원규모 및 사업절차 ..... 1

II. 1,2단계 세부업무 ..... 5

III. 3,4단계 세부업무 및 사업계획변경 등 ..... 6

IV. 당부 요청사항 ..... 7

첨부 1) 사업대상 관련법 발췌

첨부 2)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세부절차

첨부 3)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사전조사 및 컨설팅 설명자료

첨부 4)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1,2단계 세부절차

첨부 5)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설명자료

첨부 6)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

# 1 사업대상, 지원규모 및 사업절차

□ (사업대상) 「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」 제2조제5호의 공공건축물 중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한 건축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시설

\* 세부내용은 [첨부 1] 사업대상 관련법 발췌자료 참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, 제4호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(이하 “어린이집”)
- 「지역보건법」 제2조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와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료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보건진료소 (이하 “보건소”)
-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(이하 “의료시설”)

□ (국비 현황) “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” (이하 “21년 GR사업”)을 위해서 국비 2,276억 확보완료, 1천여동의 사업대상 (이하 “GR사업건축물”)을 선정하고 사업 추진하는 것을 목표

□ (국비 지원규모) “서울시,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” (이하 “서울·중앙·공공”)이 소유(임차 포함)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인 경우 총 사업비의 50%, 그 외의 경우는 총 사업비의 70% 지원가능

○ GR사업건축물당 총사업비는 연면적(건축물대장)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300만원/3.3㎡이고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금액은 해당 기관이 자부담

○ 서울·중앙·공공\*의 경우 건축물당 150만원/3.3㎡(300만원×50%) 까지 국비 지원가능

\* 서울 : 서울특별시, 관할 구, 산하 공공기관 / 중앙 :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/ 공공 :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43조 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(단, “서울시 외 지자체” 산하 공공기관은 제외)

○ 그 외\*의 경우 210만원/3.3㎡(300만원×70%) 까지 국비 지원가능

\* 그 외 : 서울시 외 지자체, 관할 시군구, 산하 공공기관

- 단, 소규모 건축물(건축물대장상 연면적 300㎡미만)인 경우 국비 지원 가능한 총사업비 한도는 400만원/3.3㎡이고 서울·중앙·공공은 200만원/3.3㎡(400만원×50%), 그 외 280만원/3.3㎡(400만원×70%)까지 국비 지원

사업비 지원한도	구 분	국비지원금액	국비지원비율
300만원 / 3.3㎡ (연면적 300㎡ 이상)	서울·중앙·공공	150만원 / 3.3㎡	50 %
	그 외	210만원 / 3.3㎡	70 %
400만원 / 3.3㎡ (연면적 300㎡ 미만) ※ 소규모건축물	서울·중앙·공공	200만원 / 3.3㎡	50 %
	그 외	280만원 / 3.3㎡	70 %

- (국비 지원 세부 사항) 사업대상인 공공건축물을 관할하는 기관 (이하 “사업대상기관”) 이 소유한 공공건축물에 여러 용도가 혼재된 경우, 사업대상 용도(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시설)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나,
- 원만한 건축계획을 위해서, 복합용도 건축물 면적(전용면적) 중 사업대상 용도면적(전용면적) 비율이 50% 이상인 경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100% 지원가능. 50% 미만은 지원불가

- 복합건축물 비율 산정 예시 -

◆ 건축물 전체면적(350㎡) : 어린이집 전용면적 100㎡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전용면적 100㎡, 경로당 전용면적 100㎡ 그 외 공용면적(화장실, 복도 등) 50㎡인 경우  
 ☞ 100㎡(어린이집) / [100㎡(행정복지센터)+100㎡(경로당)+100㎡(어린이집)] = 33.33%(지원불가)

◆ 건축물 전체면적(350㎡) : 어린이집 전용면적 150㎡,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 전용면적 75㎡, 경로당 전용면적 75㎡ 그 외 공용면적(화장실, 복도 등) 50㎡인 경우  
 ☞ 150㎡(어린이집) / [75㎡(행정복지센터)+75㎡(경로당)+150㎡(어린이집)] = 50%(지원가능)  
 ☞ 사업비 지원금액 = 건축물 전체면적(350㎡) X 국비지원금액

\* 전용면적은 해당용도(어린이집, 보건소, 의료시설)을 위해 독점하여 사용하는 면적 (예시 :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서만 쓰는 식당, 화장실의 경우 전용면적으로 포함)  
 \*\* 공용면적은 해당용도외 타용도와 함께 쓰는 면적(공용화장실, 공용식당, 공용창고)

-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은 임차기간이 2026년 1월 1일 이후까지 계약 체결된 경우 지원가능

- 사업대상기관이 임차한 건축물이 복합용도인 경우, 임차한 면적에 대해서만 지원가능, 민간이 사용하는 타 용도 지원불가

□ (국비 활용 가능 범위) '21년 GR사업 관련한 용역, 공사, 이주비, 기반시설비용 등에 국비를 사용 가능 [첨부3], [첨부5] 참고

< 국비 활용 가능 항목 >

구분	세부내용	비고
GR 용역	설계(감리비, 폐기물처리(석면처리 및 관련감리포함), 구조안전보강, 설계공모대행 등)	
GR 공사	공사(철거포함), 관급자재 조달 등	
이주비	임시공간 임차비용, 이사비용	차량운행비(통학, 출퇴근), 집기류 등은 지원불가
기반시설비용	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, 전기용량 증설관련 비용 등	기반시설비용이 GR공사비보다 큰 경우 지원 불가

- 국비 활용 가능 항목으로 산출한 소요사업비(아래 예시 A참고)가 건축물당 총사업비(예시 B참고)를 초과한 비용은 사업대상기관이 100% 부담

- 사업비 관련 예시 -

◆ (CASE1) 전북 소재 어린이집 면적(495.8㎡) 인 경우

- 그린리모델링 소요 사업비 내역(A)

구분	내용	금액(천원)	비고
용역	설계	48,420	
	공사 감리비	8,960	
공사비	공사비(철거포함)	400,000	
이주비	임차비	3,000	
	이주비	2,000	
기반시설비용	도시가스 시설분담금	1,000	
소요 사업비(A)		463,380	

- 국비지원 가능 총사업비(국비&지방비)(B) :  $495.8\text{㎡} \times 30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 = 449,936\text{천원}$  [A>B인 경우]
  - 국비 :  $495.8\text{㎡} \times 21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$  (300만원×70%) = 314,955천원
  - 지방비 :  $495.8\text{㎡} \times 9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$  (300만원×30%) = 134,981천원
- 지자체 추가 부담필요 사업비(지방비)(A-B) : 463,380천원-449,936천원 = 13,444천원

◆ (CASE2) 서울시 종로구 어린이집 면적(231.4㎡) 인 경우

- 그린리모델링 소요 사업 총액(A)

구분	내용	금액(천원)	비고
용역	설계	48,420	
	구조정밀진단	20,000	
	공사 감리비	8,960	
공사비	공사비(철거 및 구조보강포함)	380,000	
이주비	임차비	3,000	
	이주비	2,000	
소요 사업비(A)		462,380	

- 국비지원 가능 총사업비(국비&지방비)(B) :  $231.4\text{㎡} \times 40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 = 280,004\text{천원}$  [A>B인 경우]
  - 국비 :  $231.4\text{㎡} \times 20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$  (400만원×50%) = 140,002천원
  - 지방비 :  $231.4\text{㎡} \times 20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$  (400만원×50%) = 140,002천원
- 지자체 추가 부담필요 사업비(지방비)(A-B) : 463,380천원-280,004천원 = 183,376천원

◆ (CASE3) 한국수자원공사 소유 어린이집 면적(330.6㎡) 인 경우

- 그린리모델링 소요 사업 총액(A)

구분	내용	금액(천원)	비고
용역	설계	18,000	
	석면 철거 및 감리비	20,000	
	공사 감리비	8,960	
공사비	공사비(철거포함)	180,000	
이주비	임차비	3,000	
	이주비	2,000	
소요 사업비(A)		231,960	

- 국비지원 가능 총사업비(국비&자부담비)(B) :  $330.6\text{㎡} \times 300\text{만원} / 3.3\text{㎡} = 300,000\text{천원}$  [A<B인 경우]
  - 국비 : 231,960천원(A)×50% = 115,980천원
  - 자부담비 : 231,960천원(A)×50% = 115,980천원

□ (사업절차) '21년내 공사가 준공되는 것을 사업 표준일정으로 선정하고, 총 4단계로 사업 추진예정

- (단계별 사업추진) I 단계 사업대상선정, II 단계 국비신청 및 교부, III 단계 사업수행관리, IV 단계 사업성과관리로 추진예정

< GR사업추진 절차 개념도 >



\* 세부 내용 [첨부 2]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사업 세부절차 참고

## 2 | I, II 단계 세부업무

- (I 단계 세부업무) 지자체 추경예산 일정 감안하여 '21년 4월 까지 국비 지원 GR사업 대상을 선정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
  - 국토부와 LH는 '21년 사업지원 가능한 전체 건축물중 “사전 조사 및 컨설팅 희망 건축물” (이하 “GR컨설팅대상”)을 공문으로 접수 중(3월 5일까지 접수)
    - \* GR컨설팅대상 접수절차 : 사업대상기관 → LH & 국토부 (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신청)
  - GR컨설팅대상은 LH와 계약한 “사전조사 및 컨설팅 용역사” (이하 “GR컨설팅업체”)가 현장조사 후 사업계획(이하 “GR컨설팅”) 수립 지원
    - \* GR컨설팅 관련 세부사항은 [첨부 3] 참고
  - 사업대상기관은 GR컨설팅업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, GR사업 총사업비 중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한 업무(추경예산 반영 등)를 진행해야 하며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
  - 3월 이후 국토부 “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공모”가 진행된다면, 사업대상기관은 검토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GR사업건축물 (국비지원) 선정을 LH와 국토부에 신청하여야 함
  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신청
  - LH와 국토부는 심의과정을 통해 GR사업건축물을 선정할 예정이며, 선정내용 통보
  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를 통해 선정 통보

- (II 단계 세부업무) GR사업 선정이 완료후 4·5월내 국비에 대한 교부 신청 및 교부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
  - “GR사업건축물로 선정이 된 사업대상기관” (이하 “GR선정기관”)은 국비교부를 LH에 신청
  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신청
  - LH는 국토부를 통해 국비를 수령 후, 국비교부 신청 접수된 건축물대상으로 국비 교부할 예정
  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를 통해 교부예정
- (I, II 단계 업무관리) LH가 전체사업관리를 진행할 예정
  - LH는 전체 사업에 대해서 현황파악 및 국토부 업무지침전파, 현안처리, GR컨설팅업체 관리 등 업무 수행
    - \* 세부 내용 [첨부 4]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1,2단계 세부절차 참고

## 3 | III, IV 단계 세부 업무 및 사업계획 변경 등

- (III 단계 세부업무) III 단계 사업수행관리는 GR선정기관이 GR관련 용역 및 공사 등 업무를 추진하고, 착공 및 준공 시 국토부에 보고
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보고
  - 국토안전관리원이 사업수행관리 시 전체사업관리(현황파악 및 현안처리) 진행
  - LH는 설계 및 시공 가이드라인을 제작·배포계획
- (IV 단계 세부업무) GR선정기관이 사업비 집행실적과 정산관련 자료를 국토부와 LH에 보고
  - \* 단, 기초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보고
- (사업계획 변경) 계획변경시 중대한 사항\*은 신청시와 동일한 절차로 국토부와 LH에 변경승인을 신청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함

- \* 중대한 사항 : GR사업 선정시 수립된 에너지 절감계획이 10%이상 하락하는 경우
- \*\* 국비 지원금액 증액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허
- \*\*\* 에너지절감률이 경미하게 변경(10%미만)되고 변경금액을 GR사업대상기관이 부담할 경우, 사업계획변경을 자체처리 가능함. 단 사업준공 및 정산 보고서 변경내용을 일괄로 보고

- (기타 안내) GR컨설팅대상이 건축서비스진흥법상의 사전검토 대상인 경우(설계비 1억원 이상) GR컨설팅업체가 사전검토서와 건축심의자료(초안)를 사업대상기관에 제공할 예정
  - 사전기획검토, 공공건축심의, 설계공모업무는 GR선정기관이 추진

#### 4 당부 요청사항

- ('21년 사업관련 당부사항) 지자체 추경일정 감안하여 '21년 상반기내 국비교부까지 완료를 위해서 지자체 적극협조 필요
  - 사전조사 및 컨설팅 시 사업대상기관은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관련자료(이주계획 및 지방비 확보계획 등) GR컨설팅업체에 적기 제공
  - 선정후에는 국비지원 증액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므로, 내실 있는 사업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 요망
  - '21년 사전조사 및 컨설팅을 진행한 건축물의 경우 '21년 사업 공모에 적극 신청하여, 금년내 사업추진 될 수 있도록 당부
  -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<sup>[첨부 6]</sup>의 사업지원 활동과 관련하여 설계도서 자료제공, 사업대상 건축물 출입 등 업무협조 요망
  - '21년 사업중 에너지절감률이 우수한 건축물의 경우 GR선정기관과 GR컨설팅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포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

- (문의사항) 이메일로 문의사항 접수 후 Q&A 배포예정

\* [greenremodeling@lh.or.kr](mailto:greenremodeling@lh.or.kr) (LH그린리모델링센터 대표메일)

## 첨부 1

## 사업대상 관련법 발췌

###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

[시행 2020. 7. 10.] [국토교통부고시 제2020-510호, 2020. 7. 10., 제정.]

국토교통부(녹색건축과), 044-201-3770

**제2조(정의)**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5. "공공건축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.

가.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
나.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
다.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

라.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등 「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받아 조성 또는 운영 중인 시설이 입주한 건축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물

###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( 약칭: 녹색성장법 시행령 )

[시행 2020. 11. 20] [대통령령 제31168호, 2020. 11. 20, 타법개정]

국무조정실(녹색성장지원단) 044-200-2885

**제43조(녹색건축물의 확대 등)** ① 법 제54조제6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
2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
3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연구회
4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및 제18조에 따른 연구회
5. 「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
6.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, 「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」,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및 「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병원
7.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및 공립대학

## 첨부 2

###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세부절차

사업 단계	'21년 사업절차	주관기관	주요 시점	비고
I 단계 사업 대상 선정	'21년 GR 사업설명회 (대상건축물, 절차, 일정안내)	국토부 및 LH, 사업대상기관	2월	
	사전조사 및 컨설팅 대상(GR컨설팅대상) 접수	사업대상기관→국토부 및 LH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	2월	
	국토부 '21년 GR사업 공고	국토부	2월	
	GR컨설팅 대상 사전조사 및 컨설팅 착수	LH & 컨설팅업체	2월	LH 사업관리 (현황 및 현안처리)
	사업대상기관과 사업계획 컨설팅 (지자체인 경우 광역까지 협의)	LH & 컨설팅업체 & 사업대상기관	3월	
	국토부 '21년 GR사업 공모 (신청기간, 신청절차, 등 안내)	국토부	4월	
	사업 신청서 제출	사업대상기관→LH 및 국토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	4월	
II 단계 국비 신청 및 교부	사업대상 심의 및 선정·통보 (사업계획 최종확정)	LH 및 국토부→GR선정기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통보	4월	
	국비 교부신청	GR선정기관→LH→국토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신청	4월,5월	LH 사업관리 (현황 및 현안처리)
III 단계 사업 수행 관리 (사업 지구별)	국비 교부	국토부→LH→GR선정기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교부	4월,5월	
	설계 용역 발주등	GR선정기관	5월~6월	
	설 계	GR선정기관	6월~7월	국토안전 관리원
	공사 발주	GR선정기관	7월~8월	사업관리
	착공 및 보고	GR선정기관→국토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	9월	(현황 및 현안처리)
IV 단계 사업 성과 관리	준공 및 완료 보고	GR선정기관→국토부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	~ 12월	
	집행실적 및 정산보고	GR선정기관→국토부&LH *기초지자체는 광역 경우 보고		
	성과 평가	LH		

\* 해당 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가능

## 첨부 3

###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사전조사 및 컨설팅 설명자료

- (사전조사 및 컨설팅) GR컨설팅대상은 GR컨설팅업체가 현장조사 시행하고,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범위내 최적 사업계획안(예산 내역,에너지절감계획 및 사업일정 등)작성하여, 사업대상기관과 협의후 확정추진(컨설팅용역비용은 국비100%지원)
  - GR컨설팅대상은 GR컨설팅업체가 현장조사시 사업대상기관의 요청시 석면조사, 구조안전점검을 진행후, GR컨설팅 추진계획
    - \* 사업대상기관은 GR컨설팅대상 신청시 석면조사 및 구조안전점검 필요여부 포함요망
  - GR컨설팅업체는 GR사업건축물별 총사업비 한도내에서 아래의 컨설팅업무 우선 검토순위에 따라 사업계획안 수립예정

#### <컨설팅업무 우선 검토순위>

- ① 필수공사·선택공사를 적용하여 에너지성능개선(절감률)이 최대가 될 수 있도록 검토
  - \* 에너지 절감률 30% 이상을 목표로 추진. 미달성 사업지의 경우 사유서 제출필요.
- ②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“석면조사 및 제거”, “구조안전보강” 적용 검토
- ③ 추가지원 가능공사 중 나머지 항목을 적용 검토

- 사업계획안은 아래의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(“GR 기술요소”)를 바탕으로 수립 예정

#### <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>

구 분	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
필수공사	고성능 창 및 문, 폐열회수형 환기장치, 내·외부 단열보강, 고효율 냉난방장치, 고효율 보일러, 고효율 조명(LED), 신재생에너지(태양광), 건물에너지관리 시스템(BEMS)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
선택공사	Cool Roof(차열도료), 일사조절장치, 스마트에어샤워, 순간순수기 * 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
추가지원 가능공사	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처리, 석면조사 및 제거, 구조안전보강, 기타 GR 관련 건축부대공사, 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, 전기용량증설 등 GR 관련 전기공사, 이사비 및 입차비용

- \* 필수공사 항목 중 1개 이상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사업신청 및 지원 가능
- \* 세부 내용 첨부3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 설명자료 참고



- GR컨설팅시 사업규모에 맞추어 컨설팅 건축물과 설비교체 건축물로 구분 추진
  - 컨설팅 건축물 : GR 기술요소가 복합적으로 구성된 건축물로 사업계획안(사업비,에너지분석,사업일정)을 수립하여 지자체 협의예정
  - 설비교체 건축물 : 고효율 냉난방장치, 고효율 보일러, 고효율 조명기기(LED)교체만 진행되는 건축물로 “컨설팅 건축물” 대비 사업비가 상대적으로 소액이며, 컨설팅기간이 2주로 짧음
- GR컨설팅시 인허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은 지양
  - \* 예시) 2009.12.29이후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한 사업대상지인 경우 외단열 적용불가
- GR컨설팅시 임의증축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, 원상복구(철거 포함)를 원칙으로 사업계획 수립 예정임. 증축 및 인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은 미반영 예정
- 구조점검후 구조정밀진단이 필요한 건축물의 경우, 구조정밀진단 비용, 보강공사비용(추정), 사업일정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예정
  - \* 구조정밀진단은 지자체에서 시행
- GR컨설팅시 추진할 업무가 명기된 사업일정표\*를 사업대상 기관에게 제공예정이며, 사업대상기관이 예산이월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연내완료 건축물과 이월 건축물로 구분할 계획
  - \* 사업일정표 주요내용 : 건축기획, 심의, 관련용역발주, 설계용역, 인허가 기간, 공사 및 용역(감리 및 석면처리포함) 발주, 공사준공 주요절차와 일정 명기된 프로세스
- 사업대상기관은 GR사업 선정후에는 사업일정표를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해야 함

## 첨부 4 '21년 공공건축물 GR사업 1,2단계 세부절차

단계	GR컨설팅 업무	사업선정 및 국비교부 등
1월 1주	사전조사 및 컨설팅 업체관련 (GR컨설팅업체) 발주 및 선정절차	
2주		
3주		
4주		
2월 1주	LH & GR컨설팅업체 계약	사업설명회(영상)
2주		
3주		
4주		
3월 1주	GR 컨설팅 업무 착수	GR컨설팅 대상 접수 / 국토부 '21년 사업공고
2주		
3주		
4주		
4월 1주	(GR 설비교체 건축물)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(GR컨설팅업체) (GR 컨설팅 건축물) 사전조사 및 계획수립 (GR컨설팅업체)	GR컨설팅 대상 접수 완료 국토부 '21년 사업공고 (1-1차) 사업신청(사업대상기관→LH&국토부)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신청
2주		
3주		
4주		
5월 1주	사업대상기관 보고회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까지 보고 (GR컨설팅업체) 사업대상기관 보고회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까지 보고 (GR컨설팅업체) GR사업 선정(1-1차) (사업계획 최종확정) GR사업 선정(1-2차) (사업계획 최종확정)	(1-1차)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(LH&국토부→GR선정기관)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통보 ** (1-1차) GR선정사업 국비 교부 신청 및 교부개시 (1-2차) 사업신청(사업대상기관→LH&국토부)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신청 (1-2차)사업대상 선정 및 통보 (LH&국토부→GR선정기관) *지자체인 경우 광역지자체 경유 통보 ** (1-2차) GR선정사업 국비 교부 신청 및 교부개시
2주		
3주		
4주		

\* 해당 일정은 사업여건에 따라 변경가능.

## 첨부 5

### 그린리모델링 기술요소

구분	GR 기술요소	내용	
필수 공사	고성능 창호	KS F 3117 규정에 의한 창세트 적용범위에 포함된 창세트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의 창세트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[별표 1]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'창 및 문' 기준 적용	
	고기밀성 단열문	KS F 2297 규정에 의한 열관류율이 1.2W/(㎡·K)이하이며, 기밀성 등급의 통기량이 1등급(1㎡/h·㎡) 이하인 것, 또는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[별표 1]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의 '창 및 문' 기준 적용	
	내·외부 단열보강	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[별표 1] 지역별 건축물 부위별 열관류율 기준 적용 (벽, 바닥, 지붕) * 단열시 열교현상을 저감할 수 있는 고정장치 사용 * 화재안전을 위해 준불연재료에 상응하는 재료 적용	
	폐열회수형 환기장치	에너지계수 값이 냉방시 8 이상, 난방시 15 이상, 유효전열교환효율이 냉방시 49% 이상, 난방시 71% 이상 제품 적용 (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열회수 환기장치 기준 적용, 또는 KS B 6879 참조)	
	고효율 냉·난방장치	보일러, 냉난방기 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 효율등급 1등급 제품	
	고효율 조명	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또는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제품	
	신재생 에너지 (태양광)	태양전지 모듈 및 인버터는 『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·이용·보급촉진법』 제13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신·재생 에너지센터로부터 인증받은 제품을 반드시 사용 * 모듈은 정격효율 18%이상 인증제품 * 접속함 및 접속함 일체형 인버터는 KS인증제품 * 건물일체형 태양광 모듈(BIPV)의 품질기준(KS C 8561 또는 8562 일부준용)에 따라 '발전성능' 및 '내구성' 등을 만족하는 시험결과가 포함된 시험성적서 제출 * 설치완료 시 설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*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내용 참조	
	BEMS	BEMS 또는 전자식 원격검침기(건물에너지사용량, 월별사용량 계측 가능 제품)	
	선택 공사	일사조절장치	외부 베네시안 블라인드, 루버, 어닝 등
		Cool Roof (차열도료)	공인시험기관 발행 시험성적서(시험방법 ASTM C1549, E903, E1918)에 의한 태양열 반사율이 초기값 0.65 이상인 도료에 한함
순간운수기		-	
스마트에어사위		-	
추가 지원 가능 공사	기타	기타 에너지 성능향상 및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사	
	건축분야	기존공사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석면 조사 및 제거 구조안전보강 기타 그린리모델링 관련 부대공사	
	기계분야	열원교체에 따른 공사비 또는 분담금	
	전기분야	전기용량증설 등 그린리모델링 관련 전기공사	
	이주비용(이사 및 임차비)		

- \* 위 항목에 준하는 기준 적용 권장하며, 항목 중 3년 이내 개선 이력이 있는 경우 생략 가능
- \* 공사 완료시 지원받은 항목에 대한 인증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여야함
- \* 내용연수(조달청 고시)를 충족하지 않은 항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
- \* 지원대상 공사 중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항목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조치 가능

## 첨부 6

###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

- (플랫폼 개요) 지역의 대학·연구소 등이 참여하는 그린리모델링 협력체계로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업 지원 및 홍보 수행

< 그린리모델링 지역거점 플랫폼 참여기관 >

권역	포함 지역	대표기관	협력기관
수도권	서울·인천·경기	성균관대학교	한국패시브건축협회 등 61개 기관
		중앙대학교	서울대, 연세대 등 7개 기관
강원권	강원	강원대학교	경동대, 한라대 등 17개 기관
충청권	대전·세종·충남·충북	공주대학교	충북대, 홍익대 등 4개 기관
전라권	광주·전북·전남·제주	(재)국제기후환경센터	조선대, 전주대 등 13개 기관
경상권	부산·대구·울산·경북·경남	경북대학교	동아대 등 23개 기관

- (지자체 협력) '21년 사업 대상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 품질·에너지성능 확보, 대상지 홍보물 제작 등 기술·행정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므로 관련 자료제공 등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함

- (사업지원) 사업대상기관의 사업 대상지에 대한 공사 관련 기술자문 및 에너지성능분석, 건물 운영 매뉴얼 제공 등
- (지역 역량강화) 지역거점 플랫폼 기관의 전문성과 교육기관을 활용한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 및 지식 습득의 기회제공  
\* 사업 담당 공무원, 종사자, 주민 참여형 지역 강좌 개설·운영 등
- (사업대상 홍보) 사업대상지 홍보 콘텐츠 제작(홍보 브로슈어,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등), 대학(원)생 홍보 기자단 운영 등
- (공감대 확산) 일반인 대상의 그린리모델링 경진대회 개최, 사업 대상지 견학 등을 통한 사업체감도 향상

◆ '20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대상의 경우에도 공사 관련 자문, 에너지 성능분석 등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자체의 협조 바람



